의안번호	2208240
의 뢰 인	복기왕 의원
회 답 일	2025.6.4.
추계번호	25B09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97억원, 2030년 461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142억원(연평균 428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97	412	428	444	461	2,142	42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 등 주요 가정의 변경과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 및 장래에 발생할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한 것으로,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의무규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적용 범위)	○	• 공식추계 ※ 본문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1)]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지급 사업[2)]은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

- (재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원대상) 퇴직한 근로자 및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년 4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2) 사업코드: 3051-300

직근로자")이나[3], 재직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한함[4]

- (지원금액)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5]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6]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7]
- (지원유형)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

---

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5.(생략)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5)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6)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회생이나 파산 등이 없더라도 노동청의 체불 임금에 대한 확인이나 민사상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8]가 포함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변화는 ①대지급금 지출 증가액(이하 "지출 증가분")과 ②대지급금 회수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증가액(이하 "수입 증가분")으로 구성됨

○ **(지출 증가분)**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변화 중 지출 증가분은 대지급금 증가분임

○ **(수입 증가분)**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체불 임금등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며[9]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10]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사업주변제금의 증가액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1]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하며, 이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9)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10) 코드: 59-596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사업대상자)**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자는 ①추계기간 동안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노무제공자의 규모에 ②대지급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① 추계기간 동안 대지급금 지급대상자

-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될 사업대상자는 2024년 기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토대로 산출
- 2024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1,438,067명)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수(명)	183,822	762,937	805,220	1,193,801	1,438,067

주: 2022년 이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연도말 기준 취득자수이며, 2023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기존 입·이직 신고 폐지 및 월보수액 신고 전환에 따라 2023년 12월 한 달간 월보수액이 신고된 순인원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② 대지급금 지급률

- 노무제공자의 대지급금 지급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 중 대지급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의 비중(0.6%)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대지급금 지급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 환경 및 노동시장의 차이, 장래의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대지급금 지급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3] 연도별·체불항목별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임금	11.4	83.9	8.3	82.9	4.2	88.2	4.4	110.4	5.7	102.8
퇴직금	10.9	39.1	8.0	38.1	4.3	39.7	5.1	47.0	6.9	54.1
합계	14.0	96.6	10.4	97.1	5.4	102.9	5.9	126.2	7.8	120.8

주: 1.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제외한 임금 기준
2. 해당연도에 도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적용자수	18,974,513	19,378,565	20,173,615	20,637,107	21,420,560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업대상자(A)	1,438,067	1,438,067	1,438,067	1,438,067	1,438,067
대지급금 지급률(B)	0.6%	0.6%	0.6%	0.6%	0.6%
사업대상자 수(C=B×A)	8,636	8,636	8,636	8,636	8,63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원단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원단가는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대지급금 지급액에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1인당 보수총액의 비중(75.6%)을 적용하여 산출

– 체불항목(임금·퇴직금) 및 대지급금 유형(도산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에 따라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6]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단위: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5,261,444	5,111,672	4,996,688	5,236,478	5,675,023

자료: 고용노동부

[표 7]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근로자와 합산 신고		21,098,841	29,406,523	40,486,318
	산재보험료	55,128	148,392	222,297	265,612	448,824
	1인당 보수총액	—	—	26	25	28
근로자	보수총액	711,277,285	678,513,811	726,403,122	762,365,522	797,348,588
	산재보험료	8,253,199	8,619,434	9,297,813	10,090,206	9,911,535
	1인당 보수총액	37	35	36	37	37

주: 1.보수총액은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정산 보수총액으로 2021년까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합산 신고
2.2022~2023년 근로자 보수총액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이 합산되어 있음
3.산재보험료는 징수결정액 기준이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임
4.2022년 이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연도말 기준 취득자수이며, 2023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기존 입·이직 신고 폐지 및 월보수액 신고 전환에 따라 2023년 12월 한 달간 월보수액이 신고된 순인원을 의미함
5.1인당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을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급단가는 산출된 2024년 기준 1인당 노무제공자 대지급금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8]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4,600,152	4,774,133	4,953,930	5,140,701	5,338,16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업대상자(A)	8,636	8,636	8,636	8,636	8,636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B)	4.6	4.8	5.0	5.1	5.3
추가재정소요(C=B×A)	39,727	41,230	42,783	44,396	46,10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 등 주요 가정의 변경과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 및 장래에 발생할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한 것으로,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률, 노무제공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대지급금 지급 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임

○ 장래의 경기변동 및 임금체불 발생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자에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경우 대지급금의 증가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급금 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

○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